

참고자료

# '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

※ FAQ는 공고게시 기간 동안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 
본 공고에 신청하실 예비창업자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2024. 1.

# [ 사업 신청 및 문의처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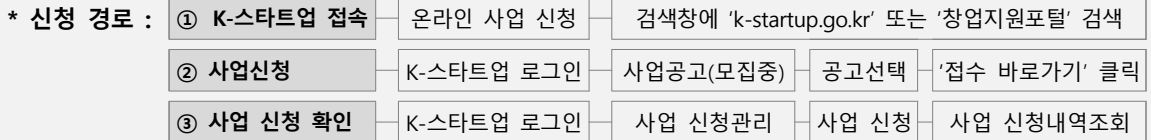
## 1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답변

☞ 사업 신청은 K-스타트업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. 사업 신청 완료 여부 확인은 K-스타트업 누리집 → '사업 신청관리'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\* (참고) 사업 신청을 위해 K-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. 해당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,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진행을 권장드립니다.

참고 사항



## 2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사업 신청은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 사업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**에 종료되며,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·접수가 완료됩니다.

## 3 업무 담당자 ID로 사업을 신청해도 되나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**창업기업 대표자가 본인 ID**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,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## 4 사업 신청 시 과제명은 무엇을 쓰나요?

답변

☞ 사업 아이템을 기입하시면 됩니다. 과제명은 창업 아이템(제품)이 한눈에 표현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\* (예시) OO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(혜택을 제공하는) OO제품·서비스

5

**사업 신청 시, 아이템이 기술 간 융복합으로 인해 단일 기술 분야를 선택하기 어려운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**

답변

☞ [전문기술분야]에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창업아이템(사업)과 가장 근접한 기술 분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.

6

**팀원이 없는 경우, 사업 신청 시 인력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**

답변

☞ 팀원이 없으신 경우 공란으로 두시고, 저장 → 제출 완료를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

7

**사업 신청 시 작성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나요?**

답변

☞ 아닙니다. 설문조사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, 선택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

8

**주관기관은 1개만 선택해야 하나요?**

답변

☞ 네, 그렇습니다. 신청자 본인이 사업을 수행할 **주관기관 1개**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·접수 마감 이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.

9

**개명한 이름으로 실명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**

답변

☞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해당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☞ 위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실명인증을 연계하는 SCI평가정보(1577-1006)으로 유선 연락하여 시스템에 개명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정정요청하여 정정이 완료된 이후에 실명인증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* **(참고)** 실명인증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☎(국번없이)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.

## 10 사업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,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?

**답변** ☞ 네 가능합니다.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, 대표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주관 기관 선택이 가능합니다.

## 11 사업 신청 기간 중 주관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?

**답변** ☞ 주관기관 변경은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. 접수 마감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.

\* (참고)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의 신청 주관기관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K-Startup 누리집 접수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.

## 12 사업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?

**답변** ☞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☎(국번없이)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해주시기 바라며,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문의는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유선 또는 K-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 사항** \* 시스템 문의 : 유선전화 — 1357번 — 3번(K-Startup 창업사업) — 3번(창업사업 문의) / 0번(종합 상담-시스템) / 카카오톡 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검색

## 13 K-스타트업에서 상담하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
**답변** ☞ K-스타트업 접속 후,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글을 작성하면,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.

**참고 사항** \* 경로 : K-Startup — 고객센터 — 상담하기 — 상담신청 — 등록

## 14 사업 신청과 관련한 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**답변** ☞ K-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후 고객센터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 탭에서 「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(PMS) 사용자 매뉴얼」 확인이 가능합니다.

\* (참고) 사업 신청 전, 시스템(PMS) 이용 매뉴얼 숙지를 권장드립니다.

**참고 사항** \* 경로 : K-Startup — 고객센터 — 온라인 매뉴얼 — 창업사업 매뉴얼 — 시스템 매뉴얼 (창업자) — 매뉴얼 다운로드

## 15 본 사업의 절차, 운영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?

<b>답변</b>	<p>☞ K-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후 알림마당에 있는 공지사항 탭에서 「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사업 신청 전 지침에 명시된 창업기업 의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-----	---

<b>참고 사항</b>	<p>* 경로 : K-Startup — 알림마당 — 공지사항 — '통합관리지침 검색' —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(제11차개정)' 다운로드</p>
--------------	---

## 16 사업 지원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. 해당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?

<b>답변</b>	<p>☞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, 1357 혹은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선 또는 K-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통해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-----	---

# [ 신청자격 ]

## 1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되어 있는 경우,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**답변**

☞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,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유무를 확인하므로 공고일 이후 전액 변제하여도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.

\* **(참고)** 임금 체불사업주 해당 여부는 '고용노동부 누리집(<https://www.moel.go.kr>) 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 사항**

\* 경로 :

## 2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**답변**

☞ 채무의 경우, 신청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(기업)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접수마감일('24.2.5.)까지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
**< 예외 사항 >**

**참고 사항**

1.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 예외 대상
  - 가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  - 나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  - 다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  - 라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2.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예외 대상
  - 가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  - 나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### 3 신규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가 불가능합니다.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불가능합니다.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계좌) 개설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 자의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### 4 사업 신청 시 기본 자격조건이 있나요?

답변

☞ 네, 그렇습니다. ① 공고일('24.1.12.)까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실과 ② 법원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 취임 이력이 단 1회도 없는 자, ③ 법인의 발생주식 총 수 50/100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④ 만 29세 이하('94.1.13. 이후 출생자)로 한정합니다.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해야 합니다. 이후 사실증명을 위해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 기타 필요서류는 평가과정에서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
### 5 팀으로 지원할 경우, 팀원도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?

답변

☞ 그렇지 않습니다. 대표자에 한해서 4번 질문의 답변 ①~④의 신청 자격 조건이 해당되며, 팀원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2023년과 달리 팀원에 대한 가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.

### 6 사업자등록 이력은 있으나, 매출은 없습니다. 이 경우에도 신청이 어려운가요?

답변

☞ 네, 그렇습니다.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.

### 7 외국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평가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,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 및 재외국민거소증 등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사업 완료를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 이행 가능 여부를 재확인 후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8** 현재 R&D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,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연구개발사업은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동 사업의 신청과 수행이 가능합니다.

**9** 과거 '23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, '탈락' 통보를 받았습니다. 금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과거의 사업 신청 이력이나 탈락 사실이 사업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**10**

본 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의 겸직 인력입니다,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.

**11**

대표자로 지원 후, 다른 팀의 팀원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불가능합니다. 1인 1번 신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하나의 지원 사업에서 중복 지원 적발 시,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**12**

국민연금 연체자 및 유예신청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다만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.



## [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]

### 1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한글 문서(HWP)로 작성해야 하나요?

답변

☞ 아닙니다. 워드(Microsoft Word)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모집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동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그 외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※ (주의) 전년도 사업계획서, 타 사업 사업계획서, PPT 양식의 사업계획서 등은 제출 불가하며,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 2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나요?

답변

☞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은 15페이지 내외로 작성해야 하며,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 (50MB)이 제한됨에 따라 최대 업로드 용량 내에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

### 3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도 되나요?

답변

☞ 사업계획서는 한글(HWP) 파일로 제출하시면 PDF 형식으로 자동 변환됩니다.

###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?

답변

☞ 사진, 표, 그래프 등 모두 삽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(50MB)이 제한되어 있으니 고화질의 사진을 과도하게 삽입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

### 5 현재 제품(서비스)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. 제품(서비스)가 개발 중이어도 사업계획서 3페이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나요?

답변

☞ 제품(서비스)을 개발 중인 경우, 설계도 등 완성된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6

**'23년에 타 창업지원사업 수행 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→ 신청해도 되나요?**

답변

☞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,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동일하다면, '자격요건 검토' 단계에서 시행하는 '사업계획서 중복률 검토 단계'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.

7

**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해서 제출해도 되나요?**

답변

☞ 사업계획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. 모집 공고문과 함께 안내 드린 사업계획서의 목차, 세부 항목을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8

**가점 대상자인 경우,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?**

답변

☞ 가점 대상자일 경우, 창업사업 신청 시 가점 대상에 체크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 향후 요건검토를 통해 대상자 검증을 통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.

## [ 사업비 ]

###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답변

☞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(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)으로 계상하며,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 시간 정보시스템(<http://www.wage.go.kr>)의 업종별·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'사업비 집행계획'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

### 2 선정 전 집행한 인건비를 협약체결 이후 소급받을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사업화 자금은 **협약 기간 내**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사업비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. 단, 협약체결 이후에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존, 신규고용 인력 모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.

### 3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?

답변

☞ 그렇지 않습니다. 비목 간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필요성,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.

### 4 사무실의 서랍, 책상 등을 정부지원금으로 구매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, 가구, 기구 등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. 단, 시제품을 개발,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·제작하는 비용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.

### 5 사업 수행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 회사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사업비는 협약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협약종료 후에는 잔여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.

## 6 대표자의 자녀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집행 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불가능합니다. 창업기업 대표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.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비(여비, 교육훈련비 등)는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.

## 7 제품 광고비를 정부지원금을 집행가능한가요?

답변

☞ 가능합니다. 협약 기간 내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.

## [ 평가 · 선정 ]

### 1 신청을 완료했습니다. 평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?

답변

☞ 서류평가, 발표평가 결과는 단계별 평가 종료 후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신 주관기관에서 개별 안내(문자 또는 이메일)를 드립니다.

참고 사항

\* 평가절차 :

① 요건검토

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

② 서류평가

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

③ 발표평가

프로그램 적정성 등 발표 (30분 이내)

④ 최종 선정

심의를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확정

### 2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
답변

☞ 정부지원금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등 창업기업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. 다만 신청하신 사업비를 초과하여 최종 사업비가 배정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 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접수 마감일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은 불가합니다.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발표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### 4 서류평가 점수가 발표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?

답변

☞ 서류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발하며, 발표평가를 통해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됩니다.

### 5 평가 기준이 있나요?

답변

☞ 평가는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, 타 기업/기관과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 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고문의 '평가 및 선정'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6 대표자가 부재중인 경우, 발표평가에 팀원이 대신 발표할 수 있나요?

답변

☞ 불가합니다.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. 대리평가 방지를 위해 평가 전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얼굴 대조 등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7 특허 등 핵심기술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 등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?

답변

☞ 평가를 시작하기 전 모든 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의무로 작성하며, 주관 기관별 평가위원 사전교육, 평가장 내 사진촬영, 사적통화 금지 등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보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.

## 8 평가는 누가 하나요?

답변

☞ 창업진흥원 평가관리시스템 Pool에 등록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, 선정평가 가이드에 따라 다수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합니다.

### < 평가위원 자격 기준 >

#### 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 요령(고시) 제 11조(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의 구성)

1. 산업계
  - 가.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
  - 나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
  - 다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
  - 라.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사람
2. 학계 :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
3. 연구계
  - 가.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
  - 나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
  - 다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
4. 공무원 경력자 :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갖춘 사람
5. 기술사, 변리사, 기술지도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
6.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
7. 그 밖에 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